

「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0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0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9년 11월 0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)

가. 제안이유

평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본계획(안 제4조)
-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(안 제6조)
- 행정적·재정적 사업(안 제9조)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에 따라
평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
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
안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본계획
안 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
안 제9조에서는 행정적·재정적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조례안의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